

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입사 제한사유 중 장애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입사생 선발공고 내용을 명확화 하며 용어를 맞게 정리하고, 수시·정시합격생의 차별요인을 개선하고자 제출서류를 현실화 하고 선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애차별적 요인 제거(안 제5조) : 신체장애 입사생 제한규정 삭제

- 현행 : 신체·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- 변경 :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
나. 신청서류 현실화(안 제6조 제1호) : 수시합격자 중 수능미응시자에
대한 불이익 요소 제거

- 현행 : 성적증명서(신입생 :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, 재학생 : 직전학년 성적)
- 변경 : 성적증명서(신입생 :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, 재학생 : 직전학년 성적)

다. 선발시기 변경(안 제7조) : 정시 합격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(2월초⇒2월)

- 현행 : 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
- 변경 : 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

라. 선발인원 조정(안 제8조) : 신입생 7, 재학생 13 ⇒ 20명 이내 조정

- 현행(안 제8조2호) : 신입생 7명, 재학생 13명 범위 안에서 선발

- 신설(안 제8조3호) :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
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

* 신입생 7명, 재학생 13명 범위 안에서 배정(원칙) ⇒ 원칙을 따르되
부득이한 경우 20명(남 10, 여 10) 이내에서 조정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나. 합 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0. 9. 2. ~ 2020. 9. 23.) 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2020. 8. 26. 기획실-10442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2020. 8. 26. 기획실-10442)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2020. 9. 1. 복지과-51833)

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장소, 방법”을 “신청장소, 신청방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인원, 방법”을 “선발인원, 선발방법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신체·정신상”을 “정신상 등”으로 한다.

1. 법정 전염병(결핵 등)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
제6조제1호 중 “신입생은”을 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2월초”를 “2월”로 한다.

제8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입사생 선발 시,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국민생활수급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입사생 선발공고) (생 략)</p> <p>1. 신청기간, <u>장소</u>, 방법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선발기준, <u>인원</u>, 방법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5조(자격제한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. <u>신체 · 정신상의 사유</u>로 공동 생활이 어려운 학생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제6조(입사신청) (생 략)</p> <p>1. 성적증명서(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,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)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제7조(선발시기) 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<u>2월초</u>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선발인원) (생 략)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	<p>제3조(입사생 선발공고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신청장소, 신청방법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선발인원, 선발방법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자격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법정 전염병(결핵 등)으로 공동 생활이 어려운 학생</p> <p>2. 정신상 등-----</p> <p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입사신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선발시기) -----</p> <p>----- 2월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8조(선발인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3.·4. (생 략)

제9조(선발및심의) ① (생 략)

② (생 략)

1. 국가유공자, 국민생활수급대상자,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:성적의 20퍼센트

2. (생 략)

③ (생 략)

3. 입사생 선발 시,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제9조(선발및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-----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]

최근 3년간 평창군 향토학사 이용실적

(단위: 명)

구 분	2018년		2019년		2020년	
	신청	선발	신청	선발	신청	선발
신입생(남)	2	2	-	-	-	-
신입생(여)	3	3	1	1	-	-
재학생(남)	6	6	5	5	5	5
재학생(여)	13	7	12	9	11	10
합 계	24	18	18	15	16	15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
연락처	(033) 330 - 2020